



#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중기청)」 취급기준 개정(안)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중기청)’ 취급 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신용조사방법을 차등화하여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음 -

## 1. 개정근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운용방법 관련 안내」 (보증 2016-7634, '16.03.30)

##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신용조사 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연체 대출금 보유 및 연체 빈발여부 확인 방법 차등화

구 분	개정前	개정後
개인기업	사기방지 심사정보 조회결과 출력물로 확인	좌동
법인기업		사기방지 심사정보 조회결과와 금융거래확인서 모두 확인

나. ‘가’의 개정에 따라, 심사기준표 제3호의 ‘연체빈발 여부 심사항목’ 내용 변경

심사기준표 제3항 변경 내용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연체빈발 정보 확인하나, 개인기업의 경우 사기방지 심사정보 조회결과 출력물로 같음’

3. 시행일 : 2016년 3월 31일(접수일 기준)

- 붙임 : 1.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중기청)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중기청) 개정후전문 1부.  
3.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중기청) 개정전전문 1부. 끝.

---

★과장

팀장

부장

이사장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202 ( 2016.04.01. ) 접수 ( )

우 121-705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6층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14 /전송 02-3278-8117 / [sptunik@seoulshinbo.co.kr](mailto:sptunik@seoulshinbo.co.kr) / 공개